

배합사료가격 조정배경과 관리

(농수산부 축산국)

1. 가격조정배경

농수산부는 '80. 1. 22부터 30개 품목에 대한 배합사료의 공장도 최고 판매가격을 평균 28.3%인상조정하였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국내가축 사육두수의 증대 및 경영규모의 확대 그리고 배합사료의 이용두수의 증대로 배합사료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배합사료 원료의 대종을 이루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의 수입수요도 급증하게되었다. 그러나 지난 76년부터 4개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온 옥수수, 대두등의 국제가격이 '79. 6부터 국제 유류대의 급등에 따라 급격히 앙등하여 옥수수는 사료안정기준가격인 톤당 135불 수준에서 160불 이상으로, 대두는 톤당 295불 선에서 310불선으로 앙등하여 배합사료 가격의 조기인상조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배합사료 가격의 조기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79년 하반기부터 이야기된 양돈, 양계등 국내 양축경기의 극심한 불황하에서 국내양축생산기반에 미치는 충격과 여파를 감안해서 부득이 가격인상을 유보한 가운데 그간 조성한 사료가격안정기금에서 매월 20억원씩 계속 보전하였다. 80년 1월 양축경기의 회복추세와 함께 1. 12환율이 19.8 인상조정됨에 따라 사료 가격안정기금에서의 보전액은 누증되어 매월 42억원씩 보전하는 상황하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 조정하게 된것이다.

2. 인상 사유 및 원칙

배합사료 가격인상시에는 이와같은 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맥피, 맥강등 정부고시

가격은 거치하고 제조경비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상승율만을 적용하였으며, 수송제비용과 유류대, 전력비등 인상요인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흡수케하는등 필요 불가결한 인상요인만 반영거치도록 하였는바 구체적인 인상사유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상사유 및 원칙

가. 도입옥수수 가격의 앙등에 따른 사료의 안정기준 가격 조정.

현행 : 135불/톤 - 조정 : 160불

나. 국산옥수수 69천톤 사용에 따른 도입옥수수와 의 가격차 합산반영

다. 국제대두가격 앙등에 따른 대두박 공급가 급가격조정

(대두)현행 : 295-15불/톤 - 조정 : 309-50불

라. 국내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포장비, 제조경비등 제비용의 일부 현실화

마. 환율인상 조정에 따른 도입곡류(옥수수, 대두)가격의 추가 조정

3. 배합사료 가격관리 철저

금번 배합사료가격은 배합사료 공장의 공장도 최고판매가격을 지정운영토록 하여 배합사료의 가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료효율제고를 위하여 고품사료(케렛트 사료등)의 가격은 자율화하고 국공립시험연구 기관 및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배합사료는 제조업자와의 협의가격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양축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나 양축가들도 자급사료의 증산에 주력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전환기라고 생각된다.